

1월 경상남도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

순번	홍보자료	도 담당부서
1	자동차세! 선납으로 10% 할인 받으세요	세정과
2	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.	세정과
3	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의무입니다.	예방대응과

자동차세! 선납으로 10% 할인 받으세요

(자료제공 : 행정국 세정과 ☎ 055-211-3724)

○ 자동차세 선납이란?

자동차세는 6/1일, 12/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에서 연세액을 1/2씩 총2회에 걸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,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최고 10%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

○ 세부내용

신고납부 기간	선납대상기간	납부세액	공제액
1.16. ~ 1.31.	1월 ~ 12월	연세액	연세액의 10%
3.16. ~ 3.31.	4월 ~ 12월	연세액의 3/4	연세액의 7.5%
6.16. ~ 6.30.	7월 ~ 12월	연세액의 1/2	연세액의 5%
9.16. ~ 9.30.	10월 ~ 12월	연세액의 1/4	연세액의 2.5%

※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(납기와 징수방법)

○ 신고·납부방법

- 신고 : 자동차 등록 시·군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(www.wetax.go.kr)
- 납부 : 전국 모든 금융기관, 인터넷지로, 가상계좌이체, 현금자동입출금기, 신용카드 등

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.

(자료제공 : 행정국 세정과 ☎ 055-211-3718)

○ 납세의무자

-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(인허가 등)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
※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면허

○ 납부기간 : '17. 1. 16. ~ 1. 31.

○ 종별세율

구분	인구 50만 이상의 시	그 밖의 시	군
제1종	67,500원	45,000원	27,000원
제2종	54,000원	34,000원	18,000원
제3종	40,500원	22,500원	12,000원
제4종	27,000원	15,000원	9,000원
제5종	18,000원	7,500원	4,500원

○ 납부방법

- 직접 납부 : 금융기관 방문, 자동이체, CD/ATM(현금자동입출기) 이용, 개인별 가상계좌 납부
- 인터넷 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, 은행 인터넷 뱅킹 등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.

(자료제공 : 소방본부 예방대응과 ☎ 055-211-5366)

주택용 소방시설 이란?

주택용 소방시설 :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

설치대상 : 모든 주택

** (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(*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)

설치기준

○ 분말소화기 : 세대별, 층별 1대 이상 (기본-3.3kg, ABC급)

○ 단독경보형 감지기 : 구획된 실 마다 1개 (거실 1, 부엌 1, 각 방마다 1개씩)

** 단독경보형 감지기(건전지로 작동) -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

구입방법 :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,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

관련 법령 내용

관련 법령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

-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

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
○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.



소화기 3.3Kg (약 2만원)



단독경보형 감지기 (약 1만원)